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정하는 등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시의 준수사항을 정함.

나.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의2제

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인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 1)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그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 2)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제공·판매 방식의 위장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3)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사진·음성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방식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에는 제공·판매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방법(제2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함.

라.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방식 및 절차(제2조의4 신설)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전에(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 바로 위 상

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함.

마. 신분비공개수사 보고(제2조의5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제2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일시적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는 제공 또는 판매 전)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및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

사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제공·판매 여부 및 그 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포함된 영상·사진·음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사전에(법 제22조의4에 따른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6(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보호시설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u> <u>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u> <u>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u> <u>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u> <u>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u> <u>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u> <u>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u> <u>“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u> <u>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u> <u>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u> <u>다.</u> <u>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u> <u>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u> <u>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u> <u>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관한</u> <u>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u> <u>한다.</u> <u>③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조의</u> <u>2제2항제3호에 따라 촬영물 또</u> <u>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u> <u>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u> <u>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3항에</u> <u>따른 신청 전(법 제22조의5제1</u> <u>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의</u>

경우에는 제공 또는 판매 전)에
피해자에게 신분위장수사의 필
요성 및 종류·목적·대상·범
위·기간·장소·방법을 설명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
라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
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
해자가 동의하더라도 법 제22조
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공 또
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에 따
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분
위장수사를 종료하거나, 실시하
지 않기로 결정한 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제공·판매 여부 및
그 대상·범위·기간·장소·
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광고가 촬영물 또는 복제
물 등에 포함된 영상·사진·음
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

<신 설>

<신 설>

는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
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
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
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
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
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
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
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사전에
(법 제22조의4에 따른 긴급 신
분비공개수사의 경우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
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

<신 설>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 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신 설>

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의6(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u>다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u> 5. 「<u>범죄피해자 보호법</u>」 제7 <u>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보호</u> <u>시설</u> 6. 「<u>범죄피해자 보호법</u>」 제33 <u>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u> <u>인</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연 락 처	(02) 2110 - 3712